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문공보담당자 사무과장 권오성
전화 054-832-6613

보도자료

2020. 8. 28.(금)

제 목

상주영천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은 2019. 12. 14.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교통사고(7명 사망, 41명 상해)에 대해 수사한 결과,

- 제한속도 위반 등의 과실로 사망 사고를 야기한 화물차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고속도로관리회사 관련자 3명에 대하여는 본건 사고 원인인 노면 결빙의 발생 및 도로관리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함**

1 피고인 및 피의자

- 피고인 A○○[56세, 화물차 운전자]
- 피고인 B○○[51세, 화물차 운전자]
- 피의자 C○○[37세, 주식회사 ㄱ○○(고속도로관리회사) 과장]
- 피의자 D○○[51세, 주식회사 ㄱ○○(고속도로관리회사) 총괄소장]
- 피의자 E○○[48세, 주식회사 ㄱ○○(고속도로관리회사) 팀장]

2

공소사실 및 피의사실

① 공소사실 요지

- [A○○] 당시 겨울 새벽이고 비가 내렸음에도 노면 결빙 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61km 내지 8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탑승자 3명을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B○○]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면 결빙 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85km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교각 난간에 대피해 있던 1명을 사망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② 피의사실 요지

- [C○○, D○○, E○○] 제설제 사전살포 의무 및 비상근무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다수의 차량이 빙판(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충돌하게 하여 7명이 사망하고 41명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3

수사 경과

- '19. 12. 14. 04:41경 영천 방면 26.4km 지점 다중추돌 사고(1차 사고) 발생
- '19. 12. 14. 04:48경 상주 방면 31.4km 지점 다중추돌 사고(2차 사고) 발생
 - ※ 1차 사고로 6명 사망 및 25명 상해, 2차 사고로 1명 사망 및 16명 상해
 - ※ 1차 사고는 군위경찰서가, 2차 사고는 의성경찰서가, 고속도로 관리상 과실 유무 부분은 경북지방경찰청이 각 담당
- '20. 3. 30.~4. 22. 각 사건 송치
- '20. 8. 27. 화물차 운전자 A○○, B○○은 불구속 기소, 고속도로관리회사 직원 C○○, D○○, E○○은 혐의없음 처분

▣ 불기소이유 요지

- 판례는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스스로 도로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입장임
- 이 사건 당시 사고지점의 강수확률이 30%로 예보되어 피의자들에게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강수 보고를 받은 즉시 제설 작업을 지시했다라도 표준 시속 40km인 제설차량의 속도에 비추어 사고 발생 전까지 사고지점에 대한 제설이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함

4

참고사항

- 블랙박스 영상 및 운전자들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겨울 새벽 내린 비로 인해 만들어진 노면 결빙(이른바 '블랙 아이스')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의성지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 지휘,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도로교통법규 검토 등을 통해,
 - 일부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고속도로관리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형사상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움을 확인함 ☒